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허위영상물의 반포 추가 등〉

- 권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315호)
- 박은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813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제도	4
2.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추가(권철승의원안 및 박은정의원안)	10
3.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 추가(박은정의원안) ..	17
4. 일부 인용 및 직권 명령의 활용(박은정의원안)	23
5. 판결서에 배상신청인 신원 기재 생략(박은정의원안)	26

I. 제안경위

1. 권칠승의원안(의안번호 제3315호)

가. 제 안 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8. 28.

다. 회 부 일 : 2024. 8. 29.

2. 박은정의원안(의안번호 제3813호)

가. 제 안 자 : 박은정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9. 9.

다. 회 부 일 : 2024.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권칠승의원안(의안번호 제3315호)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법원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

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송촉진법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자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강요한 자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딥페이크 등을 활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가 불법촬영을 한 자에 비해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도 덜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을 추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2. 박은정의원안(의안번호 제3813호)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소지죄(제14조)만 배상명령 신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범행 등 발생 빈도가 높거나 불법성이 중한 범죄가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영상물 유포 차단을 위해 신속한 손해배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형사소송과 별도로 통상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현행법 규정과의 형평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범행도 배상명령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강화하고, 배상 신청의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에는 전부 기각이 아닌 일부 인용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의3 신설 및 제31조제6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제도¹⁾

가. 배상명령제도의 의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함)에 따른 배상명령제도는 동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81년 3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로,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임²⁾.

즉 형사범죄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1)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62조) 및 제1심의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절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도 배상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는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까지 병합심판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도모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별도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때 생길 재판의 모순저축 방지에 제도적 취지가 있음³⁾. 특히, 동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갖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음.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⁴⁾,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⁵⁾,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나. 배상명령 대상

(1) 현행법상 배상명령 대상 범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

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24. 3. 15., p. 314.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 ⑦ (생략)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강간 및 추행죄, 절도 및 강도죄, 사기 및 공갈죄, 횡령 및 배임죄, 손괴죄(제25조제1항제1호), 그리고 위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제25조제1항제3호)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상 특수한 범죄유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상의 특수한 범죄유형(제25조제1항제2호)으로 한정되어 있음.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위에 규정된 죄 및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제25조제2항).

< 배상명령6) 대상범죄 >

근거법률	범죄유형
형법	- 상해죄(제257조제1항) - 중상해죄(제258조제1항 및 제2항) - 특수상해(제258조의2, 단체 또는 다종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및 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 - 상해치사죄(제259조제1항) - 폭행치사상죄(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 과실치사상의 죄(제26장) - 강간과 추행의 죄(제32장) - 절도와 강도의 죄(제38장) - 사기와 공갈의 죄(제39장) - 횡령과 배임의 죄(제40장) - 손괴의 죄(제42장) - 위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2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그 미수죄(제14조 및 제1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

배상명령 대상 범죄를 한정한 취지는 형사재판의 본질, 신속한 형사재판의 원칙⁷⁾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형사재판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을 과하는 재판이므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배상명령제도가 적용될 경우 형사재판이 지연되어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고, 손해 확인 및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형사재판이 민사재판화 될 가능성도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배상명령 대상 범죄를 일정한 범죄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배상명령 대상 범죄는 확대되고 있는데, 「소속법」 제정 당시에는 성범죄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⁸⁾, 2009년 11월 2일 동법의 개정으로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하여 배상명령이 가능하게 되었고(‘10. 5. 3. 시행⁹⁾), 2012년 1월 17일에는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

6) 법원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임(제25조제1항).

7) 헌법

제27조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8)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시행 1981. 3. 1.] [법률 제3361호, 1981. 1. 29., 제정]**

제25조 (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제258조제1항 및 제2항·제259조제1항·제262조(尊屬暴行致死傷의 罪를 제외한다)·형법 제26장·제38장 내지 제40장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被害者”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법」의 일부 성범죄가 추가('12. 1. 17. 시행)된 바 있음⁹⁾).

배상명령 대상에 성범죄가 포함된 것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는 범죄로 피해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2차 피해를 겪을 수도 있으므로¹¹⁾,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형사재판절차에서 동시에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

(2) 해외 입법례 및 시사점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관한 해외 입법례를 보면, 각국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따라 대상 범죄가 유동적임¹²⁾.

미국에서는 배상명령의 성격이 형사절차에서의 형벌 또는 제재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상범죄에 제한이 없으며¹³⁾, 일본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라는 점에서 대상범죄를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해 사람을 사상하게 한 죄, 강제외설 및 강간 등의 성범죄, 체포 및

9) 부 칙 <법률 제9818호, 2009. 11.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부 칙 <법률 제11163호, 2012. 1.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반복적인 진술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 등을 입을 수 있음.

12) 황운상, 배상명령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2012. 4., p. 106.

13) 김정우·고은주,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97호, 2014·봄), pp. 155~158. / 황운상, 앞의 글, pp. 103~108.

연방법 Title 18에 언급되는 모든 범죄와 Title 49의 마약범죄를 포함한 일정 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18 U.S. Code § 3663.Order of restitution)

감금의 죄와 더불어 약취 및 인신매매의 죄(이들 죄의 범죄행위를 포함한 죄 및 이들 죄의 미수를 포함)와 관계된 형사피고사건(단 자동차 사고의 경우는 제외)으로 한정하여¹⁴⁾ 우리나라의 배상명령 보다 대상 범죄의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한 취지 및 현행법 체계 등을 고려하면, 배상명령 대상 범죄는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추구하는 각각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도록 손해 확인 및 손해배상액 산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한 범죄에 한정하여 인정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⁵⁾.

따라서 배상명령 대상 범죄 확대는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고려하되 타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 절차의 지연 등에 따른 피고인의 인권문제, 형사재판부 판사의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 판단됨.

14) 김정우·고은주, 앞의 글, pp. 159~161. / 황윤상, 앞의 글, pp. 102~108.

15) 우리나라의 배상명령제도는 신속한 소송을 전제로 하는 사상적 배경에서 탄생한 제도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판단을 위한 충실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배상명령)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추가(권칠승의원안 및 박은정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권칠승의원안 및 박은정의원안은 모두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규정된 죄¹⁶⁾를 추가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동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동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현행	개정안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배상명령) ①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2. ----- ----- <u>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u> -----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나.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법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중 배상명령 대상 범죄를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에 규정된 죄로 한정하고 있는데¹⁷⁾ 개정안은 동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규정된 죄를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추가하고 있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는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¹⁸⁾ 등의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에 신설되었고¹⁹⁾, 범죄구성요건 중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를 삭제하고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며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하는 내용으로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바 있음²⁰⁾.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생략)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8)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임.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참고

동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²¹⁾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 2020년 5월에 신설되었고, 2024년 10월 16일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개정되었음²²⁾.

위 두 범죄 즉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규정된 죄를 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하는 개정안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위 두 범죄와 관련이 있는 범죄로서 현행법상 배상명령 대상인 제14조(카메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참고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규정된 죄²³⁾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

범죄구성요건 및 범정형을 다음의 표와 같이 비교해 보면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규정된 죄의 죄질이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규정된 죄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도 덜하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허위영상물의 반포가 실제 촬영된 불법 영상물의 반포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4년 10월 16일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규정된 죄의 범정형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규정된 죄의 범정형과 같도록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범죄구성요건 및 법정형 비교²⁴⁾>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영상물편집등)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등이용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위 촬영물 등의 반포 등을 한 자,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영상물반포등) 위 편집물 등의 반포 등을 한 자, 사후에 그 편집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등이용강요) 위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편집물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상습(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등이용강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또한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규정된 죄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 또한 매우 광범위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남길 수 있고 피해자가 피해 이

24) 표 안의 ()부분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등에 따른 죄명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생략함(예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후 법적 절차를 통해 2차 피해도 겪을 수 있어 형사재판절차에서 동시에 배상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규정된 죄를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것은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배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성적허위영상물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도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돕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배상명령 제도 도입의 취지 및 필요성,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빠른 피해회복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3.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 추가(박은정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및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규정된 죄²⁵⁾를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공판절차에서 동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동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현행	개정안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배상명령) ①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2. -----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 -----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나.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법은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중 배상명령 대상 범죄를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및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에 규정된 죄로 한정하고 있음²⁶⁾.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및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에 규정된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대한 경우 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등으로 대부분 신체적(물리적) 접촉을 전제로 한 경우로 보임.

개정안은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및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규정된 죄를 배상명

26)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 행위 /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령 대상 범죄에 추가하고 있는데,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규정된 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판매, 배포, 제공, 소지 등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²⁷⁾.

또한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규정된 죄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등으로²⁸⁾, 이러한 대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성적으로 학대되거나 착취당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문

27)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8)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피해 또한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피해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및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규정된 죄를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것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신속히 배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한편, 2024년 10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죄가 신설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 또한 배상명령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⁹⁾

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4. 10.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 관계 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도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돕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제도 도입의 취지 및 필요성,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빠른 피해회복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4. 일부 인용 및 직권 명령의 활용(박은정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배상명령 신청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인용하여야 하고 전부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상명령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가급적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25조의3(일부 인용 및 직권 명령의 활용) ① 배상명령 신청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인용하여야 하고 전부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 배상명령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가급적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한다</u>

나.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법 제25조는 상해죄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

청에 따라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상명령 신청의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나 법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배상명령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이에 개정안은 일부 인용 및 직권 명령의 적극적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상명령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이는 현행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판예규)³⁰⁾」 제6조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임.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6조(일부 인용 및 직권 명령의 활용) ① 배상명령신청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인용하여야 하고 전부를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상명령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되 특히 공소제기된 범죄의 피해품이 현금인 경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한다.

즉, 개정안은 재판예규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일부 인용

30)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상명령제도 운영의 활성화) 형사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정한 손해를 형사절차와 병행하는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각급 법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형사배상명령제도에 관한 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법관 및 직원들에게 그 중요성을 주지시킴으로써 배상명령제도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힘써야 한다.

및 직권 명령 제도 활용에 관한 법원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재판예규는 법원의 재판 업무와 관련된 절차나 내부 사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내부 규칙인데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배상 명령 일부 인용 의무화 및 직권 배상명령 선고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³¹⁾.

다. 관계 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현재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의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미 예규에 따라 실무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법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규범적·실무적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31) 법률에 일부 인용 의무화 규정이 신설되면 법원은 각 사건에서 신청의 타당성을 더욱 세밀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형사재판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소송 지연을 초래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5. 판결서에 배상신청인 신원 기재 생략(박은정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³²⁾, 법원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 부분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³³⁾, 배상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이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유죄판결서 정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³⁴⁾.

3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3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분의 송달)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 부분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분 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3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7조(판결서 기재) ① 사건과 당사자 표시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별지 기재례 2).

1. 배상신청사건은 형사사건란 하단에 표시한다.
2. 배상신청인(직권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자"로 표시)은 검사(변호인이 있을 때에는 변호인)란 아래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표시하며 대리인은 배상신청인란 아래에 표시한다.

개정안은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형법」 제32장에 규정된 죄(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배상명령대상 성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제5항의 유죄판결서의 정본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 중 「형법」 제32장에 규정된 죄 및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을</u>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인의 성명의 일부 또는 주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별지 기재례 3).

② 배상명령은 형사판결주문 아래에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표시하고, 신청을 일부 인용할 경우에도 일부를 기각한다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

1. 신청을 인용할 경우

"피고인 ○○○는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또는 합의된 치료비) 금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신청을 각하할 경우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3.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의 경우

"피고인 ○○○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금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나.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개정안에서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에 배상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성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인의 신원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배상명령 신청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인적 사항 유출로 인한 추가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이해되며, 그 취지는 일응 공감할 수 있음.

다만,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데³⁵⁾, 배상명령에 채권자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실제 강제집행에 있어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³⁶⁾.

3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6) 민사집행법

또한 배상명령에 따라 채무자인 가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채권자인 피해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채무를 이행하는 것³⁷⁾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³⁸⁾.

따라서 배상명령 판결서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채무이행 등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①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② 집행권원에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문에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주는 때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등 또는 주소를 적어야 한다.

37)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38)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공탁법상 형사사건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의 변제가 어려울 수 있음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한편,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의 신원 정보가 가해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현행법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분의 송달)는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분 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린 신청서 부분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³⁹⁾,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제3항은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서에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⁴⁰⁾⁴¹⁾.

다. 관계 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유죄판결서의 정본 자체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강제집행에 있어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상명령이 포함된 판결서 정본에는 배상신청인의 인

3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분의 송달)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 부분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분 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4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41) 즉 배상명령이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원을 알릴 수 밖에 없음

적사항을 기재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송부하는 판결서 등본, 초본에는 음영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상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가리고 송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배상채무를 임의 이행할 방법이 없는 문제, 채권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각종 결정(예컨대 경매개시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무자(피고인)에게 송달될 수밖에 없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적절한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61